



사무장병원의 운영실태

김동겸 선임연구원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 동안 사무장병원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액은 1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 저하,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¹⁾에 대한 개설 자격을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²⁾이나 공적 성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음³⁾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영리목적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사전 방지하는 데 있음⁴⁾
- 이를 위반 시 의료법에 의거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이 선고되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이 취해짐
 - 먼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⁵⁾ 및 의료기관 개설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⁶⁾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⁷⁾ 등이 이루어짐

1)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업을 하는 곳을 의미함(의료법 제3조 제1항)

2)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함(의료법 제2조)

3)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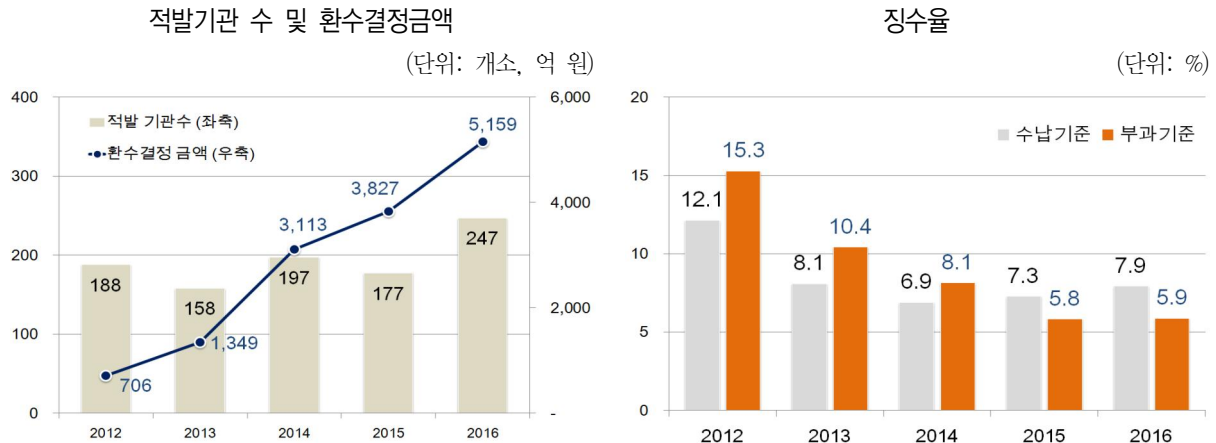
5) 의료법 제87조 제1항

- 한편,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과 더불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처분이 내려짐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⁹⁾에 대한 적발과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2016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수는 24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5,159억 원으로 2012년 대비 7.3배 증가하였음
 - 최근 5년 동안 사무장병원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총금액은 1조 4,154억 원에 달함
-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2016년 기준 7.9%에 불과하며, 최근 5년의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7.7%에 그치고 있음
 -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수사 개시 및 환수절차 진행과정에서 재산의 처분·은닉, 폐업 등이 이루어져 징수시점에 환수할 재산이 없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임¹⁰⁾

〈그림 1〉 사무장병원 적발실태 및 징수율



주: 1) 환수결정 기관 수는 중복 결정 건을 포함함

2) 부과기준: 징수금을 부과 연도에 납부한 것으로 반영, 수납기준: 징수금을 수납 연도에 납부한 것으로 반영

자료: 오제세 의원실 보도자료(2017); 박인숙 의원실 보도자료(2017);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6)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7) 의료법 제64조 제1항

8) 한편,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짐(의료법 제65조)

9)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도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 파악하기도 함(기획재정부(2016. 10. 21), 제2차관 주재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3차 회의)

10) 문정립(2014),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 의료정책포럼

- 환수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립형태별로는 의료생활협동조합¹¹⁾ 형태의 의료기관이 최근 늘어나는 특징을 보임

- 요양기관종별 환수결정금액 비중을 보면, 요양병원(52.9%), 의원(15.2%) 등의 순임
- 설립형태별 환수결정금액 추이를 보면 의료생활협동의 환수결정금액이 2015년 이후 크게 늘어나, 2016년 기준 전체 환수결정금액의 35.6%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생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도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율은 각각 79.1%와 87.9%에 달하고 있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무장병원의 개설통로로 악용되고 있음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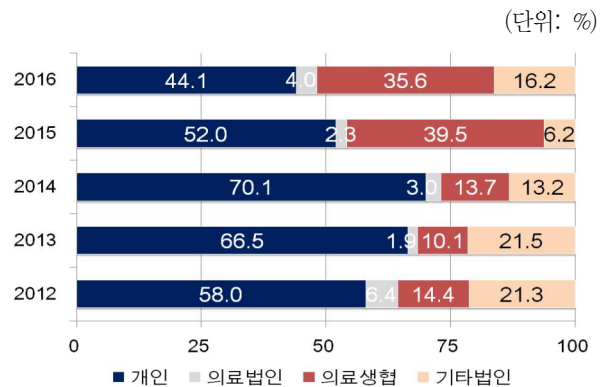
〈그림 2〉 요양기관종별 · 개설형태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 및 환수결정금액 비중

(a) 요양기관종별(최근 5년 누적실적 기준)

(b) 개설형태별

(단위: %)

구분	적발기관 수	환수결정금액
병원	6.2	14.2
요양병원	18.7	52.9
의원	39.5	15.2
치과병의원	7.1	0.8
한방병의원	19.5	4.2
약국	9.1	12.7



주: 요양기관종별 적발 건수는 2012년~2017년 6월까지의 누적실적임

자료: 오제세 의원실 보도자료(2017); 박인숙 의원실 보도자료(2017);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 사무장병원으로 야기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¹³⁾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¹⁴⁾가 진행되고 있어 그 진행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kiqi**

- 11) 의료생활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특정요건(조합원 수, 출자금 등)을 충족할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함
- 12) 박지순(2017),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 13) 사무장병원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장비·인력 부족, 의사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며, 영리추구 목적으로 인해 과잉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문정림(20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5. 30) 등)
- 14) 20대 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과 징수 강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8, 2017. 2. 14)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의사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9호, 2017. 2. 14)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단순가담 의료인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자진신고감면(Leniency)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등도 진행 중임